

「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정부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으로 인해 구)금오공대 캠퍼스부지를 당초 계획 보다 축소매입하고, 양포파출소 건립부지 교환으로 발생한 미 활용 시우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[안전1] 금오공대 구)캠퍼스 부지매입

1) 제안설명

금오공대 구)캠퍼스 모바일융합기술센터, 비즈니스지원센터,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

2) 주요내용 【취득자산】 - 변경

- 토 지 : 35,019m²(신평동188-1번지 외 11필지)
- 건 물 : 34,356m²(본관외 3동)
- 기 타 : 공작물 16점, 수목380본
- 기준가격 : 41,031,581천원(감정가)

【구. 금오공대 캠퍼스 자산취득】 - 당초

- 토 지 : 89,398m²(신평동188번지외 15필지)
- 건 물 : 54,497m²(본관외 17동)
- 기 타 : 200점(공작물 161점, 입목죽 39종)
- 기준가격 : 약 67,016,673천원(假 감정)

[안건2]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

1) 제안설명

양포파출소 건립 부지교환으로 발생한 미 활용재산을 매각하여
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
제고코자 함

2) 주요내용 【처분재산】 - 구,원평파출소

- 토 지 : 180m²
- 건 물 : 134m²
- 기준가격 : 1,057,704천원(감정가)

4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 및 건물을 매입,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은

- 첫 번째 안건인 금오공대 구)캠퍼스 부지매입건은 지난 159회 임시회에서 신평동 188번지 외 15필지(토지 89,398㎡)와, 건물 본관 외 17동(54,497㎡) 그리고 기타 공작물 등을 취득을 하기로 가결하였으나, 정부의 산학융합지구(QWL밸리지구) 조성사업으로 인해 취득대상을 신평동 188번지 외 11필지(토지 35,019㎡)와 건물 34,356㎡, 기타 공작물 16점과 수목 380본으로 변경 취득하여, 모바일융합기술센터, 비즈니스지원센터, 3D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함.
- 두 번째 미활용 사유재산 매각건은 양포파출소건립 부지교환으로 발생한 미 활용 재산인 구미시 원평동 121-5번지 구)원평파출소 부지 180㎡와 건물 134㎡를 매각코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금오공대 구)캠퍼스 부지 매입건은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규정에 의거 2011. 2. 28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,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과 기준가격이 30%를 초과한 취득이나, 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
 - 당초 89,398㎡(670억원)에서 35,019㎡(410억원)으로 △54,379㎡(△260억원)를 축소하여 취득하는 변경(안)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
- 구.원평파출소 사유재산 매각건은 교환부지로 발생한 미 활용 재산의 매각으로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